

울산지방법원 2022. 9. 8 선고 2022가단3249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9. 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1997. 10. 31. 접수 제535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이현정

별지